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요건 완화 〉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90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현행제도와 비교	3
3.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민회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5. 13.
3. 회 부 일 : 2025.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과반수의 찬성¹⁾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 ⑥ (생략)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u>3분의 2 이상의 찬성</u> 으로 의결한다.	⑦ ----- ----- ----- ----- ----- <u>과반수의</u> ----- -----.
⑧ ~ ⑩ (생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1) 현행 제도상 재적위원 7인 중 4인 이상 찬성

2. 현행제도와 비교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6조는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제1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제3항).

추천위원회 위원은 ① 법무부장관, ② 법원행정처장, ③ 대한변호사협회장, ④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⑤ 그 외 교섭단체들이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고(제4항),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제7항).

3. 검토의견

재적위원 3분의 2(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현행 요건은 7명 중 3명의 위원들이 의결을 거부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장기간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인사 지연으로 인해 수사지연, 공수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유사성이 있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²⁾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합성이 떨어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의결을 과반수 찬성 요건으로 완화할 경우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한 취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2020. 12. 15.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였는바, 현재의 추천위원회 구조상 교섭단체 한 곳의
의견만으로는 장기간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